



# 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지출보고서 작성 확인 등 요양기관 안내 협조 요청

1.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.
2. 최근 일부 불법 영업대행사(CSO)등이 “자사는 지출보고서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리베이트에서 자유롭다”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.
  - \* 영업대행사: 일반적으로 사인 간 계약 체결을 통해 제품설명회 등 제약회사(의료기기업체)의 영업활동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함

## < 안내 사항 >

의사·치과의사·약사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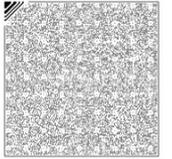
① **의약품(의료기기) 제품설명회 등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사원의 소속을 확인(해당 의약품 제조·수입사에 소속된 직원 여부)**

☞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수수 또는 제품설명회를 할 수 없는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 등 거래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피해 방지

② **영업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식음료 등이 지출보고서에 본인 실명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**

☞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, 의료법 위반 가능성 큼

3. 영업대행사가 의료인등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역은 영업대행을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작성·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,
  - 영업대행사·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·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, 제약사 등에 대한 검경, 공정위, 세무당국의 조사 중에는 해당 의료인·약사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.
4. 따라서, 영업대행사 등으로 인한 의료인·약사가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로 의심받지 않도록 상기 안내사항을 의료인·약사에게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붙임 : (참고1) 리베이트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개요 1부.  
 (참고2) 의약품공급자 등에 기 배포한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1부. 끝.

**보건복지부장관**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약사회

---

연구위원(을) **박진선**      보건사무관 **이은지**      약무정책과장 **윤병철**      전결 2019. 10. 8.

협조자

시행 약무정책과-4087      (2019. 10. 8.)      접수

우 30113    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493      팩스번호 044-202-3927 / [sun9378@korea.kr](mailto:sun9378@korea.kr)     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